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94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박수영 · 임이자 · 이인선
최은석 · 박대출 · 박성훈
김재섭 · 백종현 · 김민전
박충권 · 김 건 · 권영세
이종배 의원(13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2조부터 제33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한다)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한미 협의위원회”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명한 자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말한다.

4. “미국 투자위원회”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를 말한다.

5.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6. “자산위탁”이란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운용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제3항제2호,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이 법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치하는 기금과 위탁기관으로부터 자산위탁의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하여 제29조제3항 각 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다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 ⑦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 ⑧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전략적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에 관한 사항
4.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금액·

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관리·운용 및 이를 통한 조선협력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및 위탁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3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한미전략투자공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1.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한미전략투자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3.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공사 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의 해석 및 이행(개정 및 중지 필요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사업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투자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대미투자 집행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금융 또는 투자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략투자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2.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3. 조선협력투자 원활화 방안 검토

4. 전략적투자 사업에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참여할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단체 또는 사람의 추천

가. 전략적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나. 전략적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5.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접근성, 용수·전력 및 에너지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 노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입에 대한 검토

7.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사업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국과 협의(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하여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3. 전략적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전략적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단체 또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제1항제6호에 따른 검토결과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존속기간 동안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에 대한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금융 또는 투자 관련분야에 종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인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④ 사업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략투자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을 포함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사업관리단) ①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부에 사업관리단을 둔다.

② 사업관리단은 대미투자 대상 사업 발굴, 대미투자 사업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국에 소재한 투자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단 및 투자지원단의 설치·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관계)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을 심의·의결한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으로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

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미국 상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제12조(설립)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35조제2항의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제1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해산) 공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공사의 사장은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의 수와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⑥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임원의 임면) ① 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면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

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25조(이사회)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자산의 관리와 운용

2. 제34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이를 통한 조선협력투자 지원
3. 제35조제2항의 한미전략투자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4. 제1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5.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7.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제29조(자산위탁의 계약) ① 공사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정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이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규모 및 범위,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산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구, 그 밖에 대미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출자·투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 관련 권리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④ 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이 경우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에 대해서는 그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 회계처리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회계)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회계 및 위탁자산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②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제34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사의 출연금

2.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3. 제2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공사는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3.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2.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선협력투자지원
 - 가. 자금의 대출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 바. 출자 또는 투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 관련 권리의 인수를 포함한다)
 - 사.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위탁자산과 그 운용수익의 반환
 6. 기금의 운용비용
- ②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5장 보칙

제38조(자료의 공개) ① 정부 및 공사는 공사 및 한미 협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국회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및 한미 협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39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3.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업관리위원회 또는 한미 협의위원회 위원장의 인정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
4.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
5. 공사의 임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제40조(감독) ①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장에게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국회 보고 및 동의) ①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및 공사는

각각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8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전략적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기 이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 및 공사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략적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1조(면책)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한국은행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과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제43조(벌칙) ① 제3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이 법 제4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최초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공사의 경영평가에 대한 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외부 관계 전문기관에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